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박 병 섭**

【국문초록】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가서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 잦아짐에 따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울릉도가 주목받게 됐다. 그러던 중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스스로 출자하여 무기상인 오오쿠라(大倉)재벌과 함께 울릉도에서의 벌목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인부의 수송 등에는 일본의 국기를 단 해군군함을 사용했다. 관민이 하나가 되어 울릉도에 침입한 것이다.

에노모토는 외무성내에서 소속이 확실치 않은 그저 무인도라고 여겨지던 울릉도에 민간인의 거주실적을 만들어냄으로써 만국공법상의 영유권 확보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해군의 울릉도 침입을 계기로 야마구치현(山口縣)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침입하여 느티나무 등을 베어가는 자들이 속출했으며, 그 숫자는 약 400명에 달했다. 그들은 울릉도에 ‘일본 제국 마쓰시마’라는 표목까지 세웠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침입을 조선정부가 알아 채는 것은 1882년이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에 항의함과 동시에 울릉도에 검찰사를 파견해 일본인들의 실태와 울릉도 개척의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명을 받은 이규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인들 6, 7명이 오두막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그 내용은 이규원 『울릉도 검찰일기·계초본』에 기록됐으나 일본에서도 『메이지17년 우쓰료토 잇켄로쿠(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録)』 등에 기록됐다. 두 자료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 본 논문은 일본 鳥取短期大學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0호(2009)에 발표한 『山陰地方民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의 가필 번역임을 밝혀둔다.

** 독도=다케시마 연구 Net 대표

조선정부는 공도정책을 전환하여 울릉도의 개척을 시작했다. 1883년에 54명이 울릉도로 들어갔으나 개척민은 어려움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럴 때 개척민은 일본인들부터 식량의 해어를 받았다. 그 대신 일본인들의 벌목을 인정하는 등 그 대가도 컸다.

한편 조선정부의 항의를 받은 일본정부는 다음해 1883년 3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태정관의 유달(諭達)을 발포하고 반년 후에는 울릉도에 남아있던 일본인 전원을 쇠환했다. 그들은 귀국 후 재판에 기소됐는데 전원 무죄였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략은 일본의 법령상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제어】

조선 말기, 메이지(明治)시대, 일본해군,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이규원(李奎遠), 태정관(太政官)유달, 우쓰료토 잇켄(蔚陵島一件)

◆ 차례

1. 머리말
2. 해군경(海軍卿) 에노모토의 울릉도 침입
3. 산인(山陰) 지방민의 울릉도 침입
4. 울릉도 도항금지와 일본인 쇠환

1. 머리말

조선시대 초기, 태종은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릉도를 공도로 하였다. 그 덕분에 울릉도는 산에는 느티나무 등이 울창하고 바다에는 전복 등 어패류가 풍부했다. 그런 천연자원을 일본인들이 노린 것이다. 일본인들의 중대한 침입은 다음과 같이 5번이나 있었다. 본고는 그 중 제3차 침입사건을 다룬다.

제1차, 울릉도쟁계 혹은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1625~1696)

돗토리번(鳥取藩)의 상인 오오야·무라카와(大屋·村川) 양 가문이 에도 막부(江戸幕府)로부터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얻어 약 70년간에 걸쳐 울릉도로 침입한 사건. 안용복 납치 사건을 계기로 에도막부는 돗토리번에 대해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¹⁾

제2차, 덴포(天保) 다케시마사건(1833~1836)

일본 덴포기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이 하마다번(浜田藩)의 승인을 받아 울릉도로 침입하여 도벌한 나무를 밀수한 사건. 밀수는 에도막부에게 적발되어 하마다번과 하치에몬은 처벌당했다. 막부는 울릉도 등 먼 곳에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국적인 명령을 내렸다.

제3차, 일본 관민의 침입사건(1878~1883)

일본해군과 야마구치현민(山口縣民) 등이 관민 일체가 되어 울릉도로 침입한 사건. 본 연구의 주제임.

제4차, 일본 산인(山陰) 지방민의 불법 거주(1888~1899)²⁾

시마네현민 등이 울릉도에 불법으로 거주하여 나무를 도벌하거나 전복을 딛 사건. 한일 양 정부 간의 교섭 끝에 일본정부는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제5차,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1900~1910)

일본정부는 정책을 전환하여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으로 일본인들의 울릉도 거주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쇄도하였다.

2. 해군경(海軍卿) 에노모토의 울릉도 침입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 잦아짐에 따라 러시아 영토인 블라디보스톡에 일본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그 결과 1876년에

1) 박병섭,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2)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는 블라디보스톡에 일본정부의 무역사무소가 설치됐다. 이 블라디보스톡과 나가사키(長崎)를 연결하는 항로의 도중에 울릉도가 있었으므로 울릉도는 자연히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 항로를 자주 이용한 무쓰노쿠니(陸奥國)의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는 울릉도에 대해 “이 섬에는 광산이 있고 거목이 있고 또한 고기잡이나 벌목 등으로 벌 수 있는 이익도 적지 않다”고 기록했다.³⁾

그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마쓰시마(울릉도)를 개척하는 것은 “국가 강성의 일조”라 생각하여 1876년 및 이듬해에 ‘마쓰시마’ 개척원을 외무성에 제출했다. 무토는 마쓰시마가 일본에서 예전에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렀던 것을 모르고 마쓰시마(독도)와 혼동한데다가 일본영토로 오인한 것이다.

무토 헤이가쿠의 영향을 받아 고다마 사다아키(兒玉貞陽)는 구체적으로 「마쓰시마 착수 단계 예측」 10개조를 첨부하여 마쓰시마(울릉도) 개척 건의서를 외무성에 제출했다.⁴⁾ 또한, 치바현(千葉縣)의 사이토 시치로베(齊藤七郎兵衛)도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하여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의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에게 「마쓰시마 개도원(開島願) 및 건의」를 제출했다.⁵⁾ 그러나 외무성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2년 뒤 사이토는 다시 「마쓰시마 개척원」을 나가사키현의 시모무라 린하치로(下村輪八郎)와 공동으로 세와키에게 제출했다.⁶⁾ 세와키는 이들을 지지하여 ‘우리의 속도 마쓰시마’를 개척하도록 몇 번씩 외무경(外務卿)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등에게 진언하였다.⁷⁾ 세와키도 확증은 없었으나 울릉도를 ‘우리의 섬’으로 간주했다. 실은 이러한 진언과 개척원이 외무성내에 심각한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의 혼동을 초

3) 北澤正誠, 『竹島考證』 下, 제8호·16호문서, エムティ出版, 1996.

4) 위의 책, 제9호문서.

5) 위의 책, 제13호문서.

6) 위의 책, 제20호문서.

7) 위의 책, 제14호·17호·18호문서.

래했다. 외무성에서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위치, 소속, 혹은 원래 오키의 앞바다에 있는 섬이 하나인지 둘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무성은 수년간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울릉도로의 일본인 침입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계기를 만든 자는 주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였다. 그 경위를 ‘우쓰료토 잇켄(蔚陵島一件)’을 담당했던 야마구치현청의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는 이렇게 적었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의 발단은 지난해 에노모토 공사가 러시아에 도항하던 중에 이 섬을 발견한 것이었다. 에노모토의 처남 하야시 신지로(林紳二郎) [옛 육군 군의관 林紀의 동생] 도쿄부 평민 치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 이와사키(岩崎) 아무개 등이 도항을 발의하고 메이지11년에 먼저 시험적으로 치카마쓰 마쓰지로가 기선 다카오마루(高尾丸)에 승선하여 울릉도로 건너갔다가 일단 귀국한 뒤 다시 도항하여 벌목, 어획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12년의 일이라고 한다.⁸⁾

에노모토 공사는 러시아로 도항할 때 ‘이 섬’ 즉 울릉도를 발견했다고 하니, 그는 실제로 울릉도 부근을 지나 블라디보스톡의 무역사무관에 가서 그곳에서 울릉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이 에노모토의 이야기를 처남 치카마쓰 마쓰지로가 듣고 메이지 11(1878)년에 시험적으로 도항하고,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벌목과 어획에 종사한 듯하다. 치카마쓰는 이 때쯤부터 인부와 어부들을 야마구치현에서 모집한 것이다. 메이지12, 13년쯤 야마구치현 무카쓰쿠반도(向津具半島) 오오우라(大浦)의 해녀들이 울릉도 방면으로 출어했다는 증언도 있다.⁹⁾

8)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録』, 山口縣文書館 소장 (行政文書戰前A土木25).

9) 吉田敬一,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p.210.

치카마쓰나 에노모토의 울릉도에서의 벌목, 어획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된 듯하여 1880(메이지13)년에는 도쿄(東京)의 오오쿠라 재벌에서도 출자를 받아 사업을 확대하였다. 위의 야마모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런데 13년이 되자 도쿄의 오오쿠라 구미(大倉組)와 짜고 오오쿠라도 많은 자금을 출자하여, 군함 이와키(磐城)호에 인부나 직공 등을 태우고 도항했다. 군함을 차용하는 것은 에노모토가 다키노(瀧野)합장에게 부탁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그 후 수목의 벌채 등에 종사하기는 했으나 예상한 만큼의 이익이 없어 에노모토, 하야시, 치카마쓰 등은 3천엔 상당의, 오오쿠라 재벌은 약 1만엔의 손실을 입고 결국 메이지14년 10월에 이르러 벌목사업을 중지하고 해군성의 용선 가이소마루(廻漕丸)로 벌채한 목재를 싣고 인부 등을 귀환시켰다.

에노모토는 울릉도의 사업에 단순히 자금만 출자한 것이 아니라, 무기상인으로서 성장한 오오쿠라 재벌을 공동으로 끌어들였다. 그 뒤 해군경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에 군함을 이용한 것이다. 에노모토는 1879년 11월에는 외무대보(大輔) 및 의정관(議定官)을 맡았으며, 이듬해 2월에는 해군경을 겸임했으므로¹⁰⁾ 군함 이용은 용이했을 것이다.

또한, 울릉도에서의 벌목사업에 해군의 가이소마루가 사용된 것은 시마네현이 1881년 11월에 내무성에 제출한 문서 ‘일본해내 마쓰시마 개간에 관한 질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시마네(島根)현이 나카(那賀)군에 사는 오오야 가네수케(大屋兼助)가 제출한 마쓰시마(울릉도) 개간원을 바탕으로 작성한 질문서인데 그 중에 가이소마루와 오오쿠라 재벌의 일이 “도쿄부하(東京府下) 오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가 설립한 오오쿠라 구미(組)의 사원 가타야마 쓰네오(片山常雄)라는 자가 목재 벌채를 위해 해군성 제1가이소마루로 올해8월 해당 지역으로 도항했을 때 오오야 가네수케가 하마다에서 승선하여 현

10) 講談社編, 『榎本武揚シベリア日記』, 講談社學術文庫, 2008, p.333.

지를 실제로 조사했다.¹¹⁾”고 적혀 있다. 이로서 울릉도의 벌목사업에 해군 선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노모토의 군함 이용에 관해 기코 무쓰토(木京睦人)는 “해군의 군선을 개인의 사업에 이용하는 등 현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¹²⁾”라고 적었으나 이것은 그 당시에든 문제였다. 후일 내무성내에서 ‘어느 관리’의 군함사용이 문제시 되었는데 이는 나중에 다룬다.

그런데 에노모토는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군함을 이용할 만한 인물이었을까? 그의 입장은 메이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사쓰마(薩摩)나 초슈(長州), 토사(土佐), 히고(肥後)번의 출신이 아니며, 게다가 과거의 보신전쟁(戊辰戰爭)에서는 메이지정부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한 에조지(蝦夷地, 北海道)의 ‘총재’였으므로, 아무리 사쓰마 출신의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의 비호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군함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에노모토가 군함을 울릉도에 회항시킨 것은 그 나름대로의 대의명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에노모토의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그 당시 울릉도를 메이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간단히 본다. 1869(메이지2)년 일본 외무성은 압초에 부딪친 조선과의 외교를 쓰시마(對馬)번에서 메이지정부로 이관하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여 고위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을 쓰시마 번과 부산에 있는 왜관에 파견하였다. 이듬해 사다

11) 外務省資料3824,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の日本人を引戻處分一件』 내무성은 시마네 질의서를 처리할 때 울릉도에 있어서의 벌목사업에 해군이 관계되고 있으므로, 조선과 특별한 협정이 있는지 외무성에게 문의했는데 그런 협정이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러므로 시마네 질의서는 기각됐을 것이다.

12) 木京睦人, 「明治十六年『蔚陵島一件』, 『山口縣地方史研究』 88호, 2002, p.75.

등은 보고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으나 그 중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이라는 제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¹³⁾ 이 보고서에 의해 외무성은 에도(江戶) 시대 겐로쿠(元祿)기에 조일 간에서 문제가 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태정관(太政官)에게도 제출됐으니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도 같은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게다가 1877년 내무성 및 태정관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소속에 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다. 내무성은 시마네현으로부터의 질문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방사(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方伺)’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섬의 역사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 즉 다케시마(울릉도) 및 ‘외 일도’인 마쓰시마(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다음에 “영토의 취사(取捨)는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신중히 태정관의 판단을 묻고자 질의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방사’를 태정관에게 제출했다. 이때 질의서에 첨부된 지도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를 보면 이소다케시마(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¹⁴⁾ 태정관은 3일 후 내무성의 질의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령 안 “질의서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음”을 작성하여 관계자들의 품의로 처했다. 이것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비롯하여 참의(參議) 겸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등이 날인함으로써 승인되어 태정관으로부터 내무성에 하달되었다.¹⁵⁾ 그러나 외무경이 승인을 했으나 이 지령안의 내용은 외무성 안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 후 외

13) 『日本外交文書』 제3권, 문서번호87, p.137.

14) 박병섭·나이토 세이추,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 p.323.

15)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제28호, 2008, p.36.

무성에서는 마쓰시마 개척원 등을 처리할 때 다케시마·마쓰시마의 명칭을 둘러싸고 혼란했던 것이다. 만약 내무성의 질의서에 첨부된 ‘이소 다케시마 약도’가 외무성 담당자에게 알려졌다면 이러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외무성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결론이 난 것은 외무성의 기타자와 마사노부가 다케시마(울릉도)의 소속 문제를 조사해 『다케시마 고증(考證)』을 엮어서 그 요약서 「다케시마 관도 소속고」를 태정관에게 제출한 1881년 8월이었다.

그 동안 외무성에서 다케시마(울릉도)의 소속 문제는 보류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만국공법¹⁶⁾의 일인자인 에노모토가 앞에 쓴 것처럼 울릉도 사업에 뛰어 든 것이다. 에노모토가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리사육 이외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서 일단 에노모토라는 인물을 살펴본다. 에도막부 말기 에노모토는 막부의 관료로써 네덜란드에 유학하여 기관학과 만국공법을 공부했다. 특히 만국공법의 공부에 열을 올려 울토랑의 『바다의 국제법과 외교』의 네덜란드어 역에 주석을 달아 『만국해률전서(『萬國海律全書』)라는 이름의 책을 남길 정도였다. 에노모토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보신전쟁에서 대적한 메이지 정부 함선의 합법적인 탈취를 피하거나, 자신들을 만국공법에 이르는 교전국으로써 외국에 인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결국 에노모토는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메이지 정부에 항복했으나 패전의 ‘총재’임에도 불구하고 만국공법의 전문가로써의 재능을 인정받아 기적적으로 메이지 정부에 등용되었다. 그 후 1874년에는 해군 중장 겸 특명전권공사의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되어 이듬해에 카라후토·치시마(사할린·크릴열도)교환조약을 체결했다. 에노모토는 이때에

16) 만국공법을 국제법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만국공법은 침략전쟁조차 합법이며 현재의 국제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 만국공법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했을 것이다. 1878년에 시베리아를 마차로 횡단하여 일본에 귀국하여 외무성의 요직을 역임했다. 한편으로는 지리학계에서도 활약하여 1879년 4월에 지리학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지학협회를 설립하여 부회장을 맡았다. 이렇듯 영토 문제나 지리, 만국공법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그가 외무성에서는 소속이 애매한 ‘무인도’인 울릉도에 3천 엔이나 투자를 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당시의 3천 엔은 현재의 쌀값 환산으로 1,600만 엔에 상당한다.¹⁷⁾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에노모토는 울릉도를 만국공법의 관점에서도 신중히 고려했음이 틀림없다. 또한 나중에 울릉도에서 일어난 어느 사건도 이를 방불케 한다. 그 사건은 1883년 울릉도에서 벌목에 종사하던 야마구치 현 아사히구미(旭組)의 부 대표 우치다 히사나가(内田尙長)가 조선당국에 발견되어 심문을 받았는데 그 때 우치다는 만국공법을 들어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조선인 : 이 섬은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외국인 등은 함부로 도항하여 상륙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륙하고 디귤다나 수목 등을 벌채한 것은 일본정부의 명령인가 아니면 모르고 도항한 것인가?

일본인 : 일본정부의 명령은 아니지만 만국공법에 의하면 무인도는 발견한자가 3년간 그곳에 거주하면 소유권이 있으므로 수목을 벌채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인 :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당신 나라의 정부에 확인을 해볼 것

17) 일본 ‘표준가격미제도’의 마지막 해인 2004년의 표준가격미는 10kg 당 3,536엔이며 현재도 쌀값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아래 静岡農政事務所 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메이지 13년의 쌀값은 10kg 당 0.7엔, 그 전년은 0.53엔, 익년은 0.7엔이며 3년 평균은 0.643엔이다. 따라서 미가 3년 평균 기준으로 메이지 13년의 1엔은 현재의 5,496엔에 해당한다. 이하 이런 계산식을 사용한다. <http://www.maff.go.jp/kanto/shizuoka/kome/pdf/meiji.pdf>

이다. 그러나 지금 모두 다 이 섬을 떠나고, 장래에 도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굳이 당신의 정부에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¹⁸⁾

무인도는 만약 그것이 무주지라면 3년이나 그곳에 살고 그 거주자의 국가가 영유를 선언하면 그 국가의 영토가 되는 것은 만국공법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우치다는 어설프게 이용하고 무인도의 발견자가 그곳에 3년간 산다면 만국공법상으로 거주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만국공법의 이름조차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에 우치다가 이러한 주장으로 되받아 친 것은 놀랄 만하다. 이러한 지식을 우치다가 가진 것은 에노모토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본다면 에노모토는 의무성내에서 소속이 확실치 않은 그저 무인도라고 여겨지던 울릉도에 민간인의 거주실적을 만들어냄으로써 만국공법상의 영유권 확보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울릉도의 개발을 치남인 하야시 신지로와 치카마쓰 마쓰지로에게 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적이라면 민간인의 사업 지원을 위해 해군 군함을 동원하는 일은 대의명분이 세워지며, 나아가서 국가에 의한 섬의 실효지배로 된다. 이런 에노모토의 열의가 오오쿠라 재벌을 움직여 출자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의 울릉도는 무인도가 아니었다. 무토 헤이가쿠는 블라디보스톡 주재 조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조선인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벌목하고 배를 만들며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¹⁹⁾ 이규원의 『울릉도 김찰일지·계초본』²⁰⁾등에 의하면 그들 조선인은 봄에 울

18) 山本修身, 앞의 「復命書」.

19) 北澤正誠, 앞의 책, 제16호.

20) 『계초본』은 논문에 따라서는 『계본초』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이라 한다. 이해은·이형근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참조.

릉도로 건너가 오두막집에 살며 배를 만들거나 고기잡이를 하여 충분한 수확을 얻어 가을에 돌아가는 것이 통례이었다.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도 약초 채취자가 1870년대부터 섬에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에노모토 등의 공동사업은 야마구치현의 『메이지17년 우쓰료토 잇켄로쿠』에 의하면 그리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에노모토와 오오쿠라 재벌은 1881년 10월에 사업을 철수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오오쿠라 재벌은 다음해에도 사업을 지속했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다무라 세이 자부로(田村清三郎)는 울릉도의 목재를 실은 배가 1882년에 야마구치현 하기(萩)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을 알리는 편지를 시모우라 도쿠로(下浦藤九郎)가 오오쿠라 키하치로에게 보냈으므로 이해에도 오오쿠라 재벌은 울릉도의 사업에 관계했다고 보았다.²¹⁾ 필시 오오쿠라 재벌은 침몰에 의한 손실을 입고 “예상한 만큼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 같다.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면 울릉도에서의 느티나무 도벌은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배들은 대부분 조그마한 돛단배였으므로 이러한 배로 울릉도까지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고 모험적이었던 것이다. 오오쿠라 재벌로서는 이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일본제국에 무기를 납품하는 것으로 돈벌이는 충분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오쿠라 재벌은 울릉도의 사업으로부터 철수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에노모토는 1881년에 사업에서 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같은 해 8월 20일 “오늘날의 마쓰시마 즉 겐로쿠 12년에 말하는 다케시마는 예부터 우리나라 땅이 아님을 알고”라고 적은 기타자와 마사노부의 「다케시마 판토 소속고」가 태정관에게 제출되어 울릉도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결정지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척원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는 일본 고래의 명칭인 다케시마, 즉 조선의 울릉도임이 판

21)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研究』(復刻版), 島根縣, 1996, p.36.

명된 것이다. 메이지 정부 내에서 이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결론지었다면 만국공법을 중시하는 에노모토는 사업을 철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3. 산인(山陰) 지방민의 울릉도 침입

에노모토가 사업을 철수한 뒤에도 치카마쓰는 ‘도쿄구미’를 조직하여 사업을 계속했다. 그런 소문이 아마구치현에서 번졌는지 아마구치현에서 울릉도로의 도항이 쇄도했다. 1883(메이지16)년 아마구치현의 하기경찰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쿄구미 외에도 아사히구미(旭組), 마쓰오구미(松尾組), 마쓰오카구미(松岡組), 하야세구미(早瀬組), 후쿠우라구미(福浦組), 노무라구미(野村組) 및 다른 한 개의 구미등 약 400명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벌목 등에 종사했다.²²⁾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도쿄구미였으며 1883년 10월 내무성 조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섬에 도쿄사가 있어 흡사 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구미에 뒤이어 섬에 오는 자들은 모두 이 회사의 지휘를 기다려 벌채를 하여야 하므로 결국에는 본사라고 불렸다. 이 회사를 도쿄의 사람이 관리했으므로, 회사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구치현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사라고 불렸으며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올해 초에는 100여명이었으나 지금은 20, 30명에 불과하다고 전함. 이 회사를 도항벌채자의 권역(權輿)로 함.²³⁾

도쿄구미는 선발조로서 또한 해군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22) 横谷佐一, 「松島景況書」, 『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 木京睦人, 앞의 논문.

23) 「蔚陵島出稼人演談筆記」, 『日本外交文書』 제16권, 문서번호132, p.334.

‘본사’로서 도항한 자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듯하다. 도쿄구미의 인원이 줄어든 것은 계절적 요인 때문이다. 울릉도의 겨울은 혹독하고 바다가 거칠어져 일본에 귀국하는 길이 끊기게 되므로 가을이 되면 일단 일본으로 귀국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한편 울릉도에서는 벌목 외에 소규모어기는 하지만 어획도 하고 있었다. 아사히구미의 대표 오오쓰군(大津郡)의 후지쓰 마사노리(藤津政憲)는 1881년 5월부터 인부를 보내 울릉도에서의 벌목사업을 개시했는데 다음 해에는 ‘직공어인(職工漁人)’을 보내 어획사업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야마구치현의 미시마(見島)군 미시마우라의 나카야마 이와노스케(中山岩之助)를 주주(株主)어업대표로 하고 미시마우라의 해녀 15명을 보내고 전복을 채취했다.²⁴⁾

이렇듯 많은 일본인들이 도항하게 되면 조선정부에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조선정부는 울릉도를 공도로 하고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파견하여 감시하고 있었다. 1881(고종18)년 수토관은 일본인 7명이 벌목한 목재를 해안에 쌓아 놓고 원산이나 부산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²⁵⁾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침입한지 3년째였다. 보고를 받은 조선정부는 일본에 항의함과 동시에 울릉도에 검찰사를 파견해 일본인들의 실태와 울릉도 개척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검찰사에 임명된 이규원은 이듬해 1882년 음력 4월30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여 5월15일까지 조사를 했다. 처음에는 육로로 울릉도를 일주하고 다음에는 해로로 울릉도를 일주했다. 마지막 날인 음력 5월 10일 이규원은 도방청포(현재의 도동)에서 일본인 6, 7명이 막사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이규원이 일본인들을 만난 일을 아마모토 「복명서」

24) 山本修身, 앞의 「復命書」; 外務省記録3532, 『鬱陵島における伐木關係雜件』.

25) 『承政院日記』, 고종18년 5월 22·23일.

도 “그 후 15년에는 조선의 김찰사 이규원, 군관 심의완, 고종팔, 서상학 등 몇 사람이 섬으로 건너 왔음”이라고 기록했다. 이들 관직명이나 이름 등은 『울릉도 감찰일기·계초본』과 일치한다. 이규원은 일본인들과의 필담에서 그들이 2년 전부터 별목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 시비를 가리고자 다음과 같이 필담을 나누었다.²⁶⁾

이규원 : 강토에는 엄연히 정해진 경계가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다른 나라의 경계에 들어와 마음대로 별목을 하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

일본인 : 우리들은 다른 나라의 경계라고 들은 적이 없다.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본국에 있으니 다른 나라의 영토인가 아닌가를 논할 수는 없다. 이미 미나미우라(南浦) 계야키다니(槻谷)에 표목(標木)이 있으니 분명히 우리 일본제국의 마쓰시마가 되었다고 알고 있다.

이규원 : 표목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다른 나라 영토에 표목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 아무튼 성명과 주거지를 알고 싶다.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주소와 이름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하기 [...]안은 일본 측 자료에 게재된 정보이지만,²⁷⁾ 양쪽의 자료는 대체로 일치한다.

南海道予州 松山邑, 內田尙長[우치다 히사나가(內田尙長), 아사히구미 부 조장 겸 각 구미 부 이사, 에히메현 와케군 니이하마무라(愛媛縣和氣郡新浜村)]

(予州는 에히메현의 옛 이름)

山陽道 長州 善和邑, 桵村善一 [노무라 켄이치(野村善一), 노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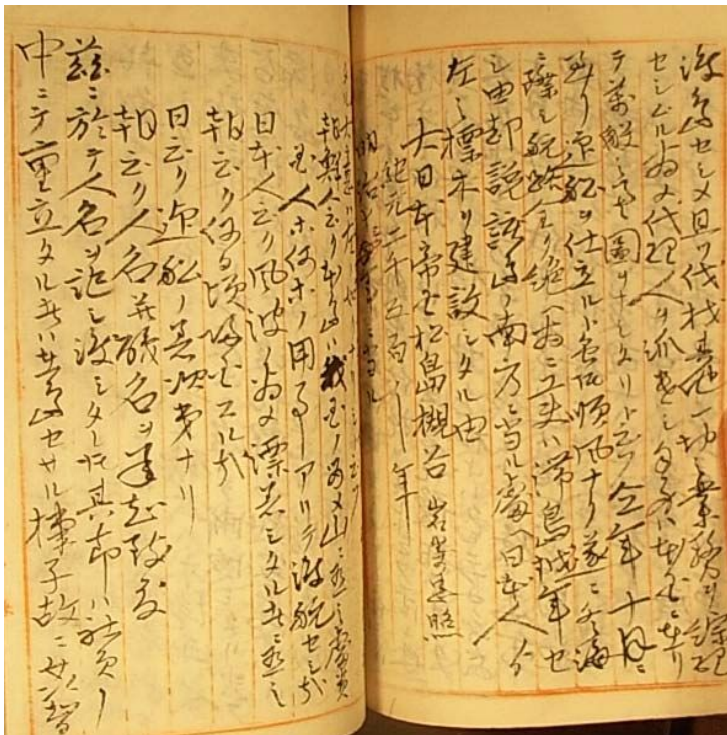
26) 이규원, 『울릉도감찰일기·계초본』.

27) 檜垣直枝, 『蔚陵島出張復命書』, 『公文別錄』, 明治15년-16년, 內務省.

미 조장 아마구치현 아사군 켄와무라 (厚狹郡善和村)
 (長州는 아마구치현의 옛 이름, 이 현 안에 아사군이 있음)

東海道總州 八田邑, 吉谷庄次郎, 吉田大吉, 鳥海要藏, 庄司勇廊, 松尾而已助 [도리우미 요즈(鳥海要藏) : 도쿄구미 조장이며 주소는 간다구 하타고쵸 1쵸메 11번지 (神田區旅籠町壹丁目貳拾壹番地), 마쓰오 미노수케 (松尾己之助) : 도쿄구미 산하 나가이구미(永井組) 조장이며 주소는 혼고구 고마고메 니시카타쵸 11번지 기류 (本郷區駒込西方町拾番地 寄留) 치바현(千葉縣) 평민, 쇼지 유지로(庄司勇次郎) : 도쿄구미] (總州는 치바현의 옛이름)

〈도판〉 이규원과 일본인들의 필담을 기록한 『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錄』



이규원은 일본인들이 말한 ‘일본제국 마쓰시마’의 표목이 있다는 말을 중대시하여 곧 바로 미나미우라 게야키다니, 즉 장작지(지금의 사동)에 가서 해변에 “대일본국 마쓰시마 게야키다니 메이지 2년 2월 13일 이와사키 다다테루(岩崎忠照) 세움”이라고 쓴 표목을 발견했다. 이것은 연월일을 제외하고 야마모토 오사미 「복명서」의 기술과 일치한다. 이 복명서에 따르면 “이 섬의 남쪽에 해당하는 곳에 일본인에 의해 아래의 표목이 세워졌다한다. 대일본제국 마쓰시마 게야키다니, 이와사키 다다테루. 기원 25 - 년 메이지13년에 해당”이라고 기재되었다.²⁸⁾ 메이지13(1880)년은 기원2540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기원25 -’의 ‘-’는 단지 긴 선이며 “몇 십 몇 년”을 생략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쪽의 자료는 연호만 상충된다. 야마모토 「복명서」에 “이와사키 아무개가 도항의 건을 발의하고 … 벌목과 어획에 종사하게 된 것은 12년이 되어”라고 기록되었으므로 이와사키 아무개가 이와사키 다다테루이며 메이지13(1880)년 2월에 표목을 세운 것 같다. 메이지2(1869)년에는 표목을 세울만 한 일본인이 도항한 기록이 없다. 단지 다음 해라면 4월 30일에 미쓰비시(三菱) 재벌의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가 나가사키(長崎)에서 다케시마(울릉도)를 향해 출항했다는 기록이 이와사키 야타로 『게이호 니치레키(瓊浦日歷)』에 적혀 있다. 그러나 울릉도에 상륙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와사키는 울릉도까지 가지 않았던 듯하다.

한편 이규원은 섬에 사는 조선인을 상세히 조사했다. 많은 조선인이 전라도 출신으로 전체 140명중의 115명, 80%에 달할 정도였다. 그들은 봄에 울릉도에 와서 임시 거처를 짓고 살면서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고 미역 등을 따서 가을에 되돌아가는 어부들이었다.²⁹⁾ 그들을 야마모토 오사미의 「복명서」는 이렇게 적었다.

28) 木京의 앞의 논문에서는 기원연호가 「紀元二千五百年」라고 되어 있어서 “-”가 생략되고 있다.

29) 이규원, 앞의 책.

조선국으로부터는 매년 약 300명 정도의 자들이 도항하고 다시마 등을 따고 가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중 4명 정도는 인삼을 채취하기 위해 섬에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전년에 남아있던 조선인은 가지고 있던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무렵 섬에 남아있던 일본인이 쌀을 주었으니 조선인은 진심으로 호의에 감사하고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호감을 샀다.

야마모토는 “남아 있던 조선인” 4명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들에 관한 기록은 1902년에 발행된 일본 외무성의 『통상회찬(通商彙纂)』 제234호에 이렇게 적혀있다.

이 섬의 조선인은 예로부터 영주하는 자는 없고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배계주, 김대목, 변경운, 전사일 등 4명이 도항하여, 함께 산간을 개척하고 밭을 일구어 농경 일을 시작했으나, 다음해에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황중해, 최도수, 전사운, 김화초, 홍봉요, 이손팔 및 전라도의 지명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장경윤 등의 7명이 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해마다 강원·경상·함경·전라도의 4도로부터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각지에 흩어져 살며 개간에 힘썼으며 본격적으로 농업을 시작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³⁰⁾

이들 조선인 거주자는 울릉도 개척의 기반이 되었다. 그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개척민이 1883(고종20)년 4월에 제1차로 약 30명, 이어서 2차로 약20명, 합계 16호 54명이 이주했다.³¹⁾ 그 후 조선인 인구는 점점 늘어 14년 뒤에는 277호 1,134명에 달했다.³²⁾

30) 『通商彙纂』제234호, 明治35(1902)년 10월 16일, p.43.

3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2007, p.152.

山本修身「復命書」에는 “올해 음력 4월 2일 조선국 고관, 병대같은 자가 약 100명을 거느리고 이 섬에 와서 일본인에 대해 상당한 무위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기록됐는데 날짜로부터 짐작하면 이 고관은 제1차 개척민의 인솔자로 생각된다.

32) 『독립신문』, 건양2(1897)년 4월 8일, 「外方通信」.

4. 울릉도 도항금지과 일본인 쇄환

1883년 3월 태정관은 외무성의 제안을 받아서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내무성 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를 울릉도로 파견하여 10월 울릉도의 일본인 전원을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그 수는 히가키 나오에 「우쓰료도 출장복명서」³³⁾ 본문에는 255명이라 했으나 부속의 명단에 따르면 총수는 266명으로 된다. 그 내역은 야미구치현 147명, 후쿠오카현 34명, 시마네현 22명, 히로시마현 21명, 아이치현 14명, 나가사키현 9명, 치바현 5명, 도쿄부·오이타현·효고현이 각 3명, 오카야마현 2명, 돗토리현·가고시마현·이시카와현이 각 1명이다. 이들을 본국으로 쇄환할 때 각 조의 대표는 별목한 느티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40여 일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히가키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모조리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갔다. 탄원서에는 울릉도 도장 전석규의 느티나무 반출 허가서가 첩부됐을 만큼 도장은 일본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석규는 ‘구조 감사장’을 히가키에게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그 해 여름 아마 제2차 개척민이 도착했을 무렵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선인 개척민 등을 태운 배가 강풍으로 조난의 위기에 처한 것을 일본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장이며 일본인들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생명의 은인 도리우미 요조’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이었다.³⁴⁾ 도리우미 요조는 앞에 말한 도쿄구미의 대표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존재이기

33) 外務省記録3824,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蔚陵島出張復命書」.

34) 상동.

도 했다. 도장 전석규가 월동했을 때 ‘쌀 두 섬’을 얻어 굶주림을 면한 것을 시작으로 도장 차관 역할을 지닌 배충은도 히가키에게 “이 섬에 도항해 온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 때때로 귀국 국민의 은혜를 입은 일이 있어, 이 큰 은혜를 잊을 수 없으니 원하는 바 이미 별채한 목재는 모두 남김없이 가지고 귀국하기를 바랍니다.³⁵⁾”고 말할 정도였다. 도장은 받은 식량 대신에 일본인들의 벌목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인의 호감을 크게 얻어”라고 될 만큼 환영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컸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남긴 느티나무의 가치에 관해 일본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이 귀국할 때 이미 베어놓은 목재를 울릉도에 버리고 왔으나 대체로 그 가치를 환산해보면 수만 엔이 넘는다고 한다.³⁶⁾”고 기록되었다. 그 가치를 현재의 쌀값으로 환산하면 수억 엔에 이른다. 느티나무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도장들은 그것을 너무나 적은 식량과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벌채되어 반출된 느티나무는 오오쿠라구미 등을 통해 일본의 외교 사교장인 로쿠메이칸(鹿鳴館)의 건축 등에 사용됐다고 한다.³⁷⁾

이렇듯 메이지를 대표하는 건축물에 쓰일 만큼 좋은 목재인 느티나무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린 도장이지만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도장에게는 봉급조차 지급되지 않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고 자주 굶주림에 떨어야 했을 것이다. 이때 일본인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식량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조선 본토로부터의 어부들은 가을에는 돌아가므로 여분의 식량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도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장은 히가키가 일본에 돌아갈 때에도 식량이 다 떨어진 상황을 “가지고 온 쌀이 떨어져서 섬 주

35) 상동.

36) 外務省資料3532, 「朝鮮國蔚陵島渡航人民處分の議」, 『鬱陵島における伐木關係雜件』.

37) 상동.

민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여 쌀 25석을 받았다. 이 도장은 울릉도의 개척을 담당했던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고발로 1884년 1월에 파면 당했다.³⁸⁾ 이유는 “전석규 금품을 탐내 일본인에게 도장증표를 주어 목재의 도벌을 허가했다고 한다.³⁹⁾”라는 것이었다. 후일 느티나무의 가치를 잘 아는 김옥균은 느티나무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갑신정변에 실패하여 일본에 망명해야만 했다.

일본정부는 울릉도에 불법으로 침입한 자들을 에치고마루(越後丸)로 송환시켰는데 그 뒤 그들의 처벌문제가 고민이었다. 외교상으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어떤 명목으로 처벌할지 문제였다.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직접 울릉도에 도항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행보(行步)규정을 적용하면 산림도벌이라는 더욱 무거운 죄가 희미해지며, 또한 도벌은 밀무역과는 다르므로 ‘일한무역규칙’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도항 면허 없이 외국에 갔다고는 하여도 관계규칙에는 벌칙이 없고 태정관의 유달에도 벌칙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나머지는 형법 373조의 산림도벌 죄의 적용이었다. 이것은 내국인이 내국에서 범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적용이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에 적당한 법률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을 무죄방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끈질기게 제기되었다. 도항금지 태정관 유달이 발표된 것은 1883년 3월이었고 그때까지 그들은 울릉도가 외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알지 못했고, 또한 금지 후라 해도 이미 울릉도에 가 있던 자들이 그 사실을 알기에는 이 섬이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곤란한데다가 귀국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 게다가 들은 바로는 해군의 어떤 함선이 인부를 다수 실어 나르고, 유명한 상인 아무개가 관여하여 목재의

38) 『승정원일기』, 고종21(1884)년 정월 11일.

39) 朝鮮史編修會, 『朝鮮史』제6편 제4권, 東京大學出版會, 1986(復刻), p.706.

일부는 로쿠메이칸의 건축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어떤 군함은 이와키 호 및 가이소마루이며, 상인 아무개는 오오쿠라 기하치로다. 혹시 이것이 정말이라면 도항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함 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경우이며 다음과 같이 우려됐다.

우리 군함이 일본 국기를 달고 외국 영토의 산림에 침입해 목재를 벌채한 것을 법정에서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것을 공판에 부쳐 모든 것이 알게 되면 조선정부는 어떠한 감정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말로 조선정부에 대응할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을 처벌하고 동맹정부의 환심을 사려면 오히려 우리 정부를 욕되게 하고 그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⁴⁰⁾

일본이 해군의 선박을 사용하여 관민일체로 울릉도에 침입하여 목재를 도벌하여 밀수한 행위는 ‘국욕’이며 조선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우려되었던 것이다. 또 이러한 사건을 재판에 붙여 만약에 피고인이 “당초의 도항은 모 관리의 명령에 의해서였고 그 목재는 관청에 제공되었다고 말하는 일이 있다면 재판관도 그 공술을 중지시키고 금기에 관계되는 일은 입을 다물게 하거나 그에 대한 공술을 제한하지 못하며 사법경도 재판관에 대한 지휘에 고심하게 된다.”라는 사태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모 관리는 에노모토 다케아키를, 모 관청은 로쿠메이칸을 말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만일 에노모토 해군경의 명령으로 로쿠메이칸 건축용 목재를 벌목했다고 재판에서 공술한다면,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일어서 곧바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해군과 정부가 궁지에 몰릴 것은 뚜렷한 일이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도 도항한 자를 모두 무죄방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40) 주34와 같음.

이처럼 일본정부는 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방면 할 것인지를 놓고 흔들리고 있었으나 외교상의 배려도 있어서 도항한 자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각지에서 벌어진 재판의 결과는 피고 307명 전원이 무죄였다. 대부분의 판결에 공통되는 점은 태정관 유달(1883.3) 이전의 행위가 불문에 부쳐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태정관 유달 이후의 행위는 “모두 목재 벌채의 일은 절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그 목재가 조선국 관리로부터 혜택으로 받은 것이므로 무죄”라고 판단되었다. 도장의 증표를 받아 벌채했으므로 무죄가 된 것이다.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이런 판결에 대해 “그 섬이 옛 막부 시절 이미 조선정부와의 협의 끝에 그 소속을 공인한 사실을 불문”에 부친 것을 들어, 만일 이 사건으로 외교상의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사법대신에게 통고했다.⁴¹⁾ 에도(江戸) 시대 한일간에서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타국의 영토에 침입하여 목재를 도벌한 행위는 도중에서 도장의 허가를 얻었다고는 하나 국욕적인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바른 논리이다.

또한 에노모토를 비롯하여 관료들은 누구 하나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에노모토는 실각하기는 커녕, 그 후 주청(駐淸) 특명전권공사, 체신대신, 농상공부대신, 문부대신, 추밀원 고문관 등을 역임하고 공작의 작위를 받는 등 훌륭한 경력을 쌓았다.⁴²⁾

결국 관민이 하나가 되어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침입하여 목재를 대대적으로 벌채한 국욕사건 ‘우쓰료토 잇켄’은 아무 처벌 없이 무책임으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가 1891년 이후 일본인들의 제4차 침입을 막지 못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논문투고일 : 2010. 2. 15 심사완료일 : 2010. 3. 25 게재확정일 : 2010. 4. 10

41) 『明治十九年六月二十二日井上外務大臣より山田司法大臣宛書簡』, 『日本外交文書』 제16권, p.339.

42) 秋岡伸彦, 『ドキュメント榎本武揚』, 東京農大出版會, 2003, p.102.

【ABSTRACT】

Japanese Third Trespass to Ulleungdo

Park, Byoung-Sup

In Meiji Era, Japanese became to expand overseas. They paid attention to Ulleungdo which was rich in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the Ministry of Japanese Navy, Enomoto Takeaki started a logging business at Ulleungdo with the Ohkura financial combine. He used a warship putting up an ensign to transport laborers to the island. These fact meant that Japanes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orked hand in hand to invade to Ulleungdo which was almost vacant.

Enomoto might aim to establish Japanese right to possess the island by practical use of it. Japanese Navy's invasion triggered massive trespass of people at Yamaguchi prefecture to the island. Their number was approximately 400. They logged zelkova trees and transported them to Japan. Once, they put a landmark naming the island as 'Matsushima, the Great Japanese Empire'.

In 1882, the Choseon government found Japanese invasion. The government protested to Japanese government about it and conducted an on-the-spot investigation to clarify the actual situation of Japanese invasion and possibility of reclaiming land. An inspector of Ulleungdo, Lee Gyu-won investigated residents and found 6-7 Japanese lived in poor houses. He communicated in

writing with them. Their conversation was recorded at *Inspection dairy at Ulleungdo* and *Gyechobon* in Korea. Its content was more or less consistent with Japanese record *Utsuryoto Ikkenroku*.

The Choseon government changed a policy leaving the island vacant to reclaim land. The government sent 54 people to the island for reclaiming land. They sometimes suffered from hunger and asked a favor of Japanese to give some food. Rewarding Japanese favor, Korean permitted Japanese logging at the island.

Accepting the protest by Korean government, Dajokan issued a proclamation to prohibit to go to Ulleungdo at March 1883 in Japan. Next, Dajokan forcibly took all Japanese remained at the island half a year later. They were indicted. However, they were found innocent. As a result, Japanese invasion to Ulleungdo was not guilty by Japanese law.

【key words】

The last years of Choseon, Meiji Era, Japanese Navy, Enomoto Takeaki, Lee Gyu-won, Dajokan's proclamation, Utsuryoto Ikken.